



환 경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 협조 요청

1.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-930(2018.4.22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「**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**(‘15.1.1 시행)」에 따른 ‘**화학물질 등록제도**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로써,

-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(량에 관계없음)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제조·수입 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○ 다만,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**시약 등 과학적 실험·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, 연구개발용 화학물질** 등은 환경부장관(한국환경공단에 위탁)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·수입할 수 있습니다.

※ ’19.1.1일부터는 개정 법률(’18.3.20 공포)에 따라 연간 0.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·수입 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, 연간 0.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또는 신고면제를 받아야 함.

3. 이와 관련, **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방법, 신청자료 작성 등에 관한 안내 자료**를 보내드리니 시약 등을 취급하는 **대학 연구실 등에 전파하여** 관련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안내자료 1부. 끝.

환 경 부 장 관



수신자 교육부장관(산학협력정책과장),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·연구처장협의회

주무관	이경하	수석전문관	서민아	과장	조은희	전결 2018. 10. 15.
협조자						
시행	화학물질정책과-2156	(2018. 10. 15.)	접수	산학협력정책과-2932	(2018.10.15.)	
우	30103	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	환경부		/ http://me.go.kr	
전화번호	044-201-6779	팩스번호	-	/ yiing@me.go.kr	/ 대국민 공개	